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-272호

「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」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, 시행 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2025년 상반기 해양수산신기술(NET) 인증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02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

2025년도 상반기 해양수산신기술(NET) 인증 시행 공고

「해양수산신기술(NET) 인증」은 국내 기업,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,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시장진출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음

1. 신청 대상 기술

가. 해양수산신기술 인증

-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·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(한국인정기구(KOLAS) 인정을 받은 시험 기관의 시험성적서 등)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 용화가 가능한 기술
-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·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(한국인정기구(KOLAS) 인정을 받은 시험 기관의 시험성적서 등)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 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
- 이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
 - *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(혹은 공사용역)이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(혹은 최종잔금이 지급)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

나.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

○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**아직 상용** 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

2. 평가분야

대분류	중분류(전문위 구성기준)	대분류	중분류(전문위 구성기준)		
	해양광물자원 (MRS01)	해안/항만			
해양자원 (MRS)	해양수자원 (MRS02)	(HLG) * 물류분야는 '우수	해안/항만 건설 및 공간활용 (HLG03)		
	해양에너지자원 (MRS03)	물류신기술등 지정' 제도에서 평가 및 지정			
	해양오염방지 (MEV01)		선박운항 (MSF01)		
	해양환경보전 (MEV02)	해양안전/교통 (MSF)	해상교통시설 (MSF02)		
해양환경 (MEV)	해양환경 위해성평가.관리 (MEV03)		해양인적안전 (MSF03)		
	해양생태계관리 (MEV04)		극지/해양 기초연구 (POS01)		
	해양기후변화대응 (MEV05)	극지해양과학 (POS)	극지/해양 자원탐사 (POS02)		
	해양수산생물자원 (MBT01)		극지 공학인프라 (POS03)		
해양수산생명	해양수산생명 현상규명 (MBT02)	수산양식	증양식 (FSC01)		
(MBT)	해양수산신소재 개발 (MBT03)	(FSC)	수산생물질병관리 (FSC02)		
	해양수산생물공정 (MBT04)	수산자원/어장환경	수산자원 (FSR01)		
해양관측 및 예보	해양관측 및 감시 (OOF01)	(FSR)	어장환경관리 (FSR02)		
(OOF)	해양예보 및 정보 (OOF02)		어업생산관리 (FSP01)		
	해양플랜트 (MEG01)	어업생산/이용 가공 (FSP)	수산식품유통가공 (FSP02)		
해양공학	선박공학 (MEG02)		수산식품안전 (FSP03)		
(MEG)	해양장비 (MEG03)		해양수산 과학기술 정보/시설 (MSI01)		
	해양통신 (MEG04)		해양수산 과학기술		
	해양재해 발생분석/예측기술	해양수산연구인프라 (MSI)	정책/영향분석 (MSl02)		
해양재해/방재 (MDP)	(MDP01)	(IVIDI)	해양수산 과학기술 인력양성		
. ,	해양 구난구호 (MDP02)		(MSI03)		

3. 평가기준

가.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심사·평가 세부기준

*「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(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112호)」별표2

구분	평가기준						
	공사 외 기술	공사 관련 기술					
	A. 신규성 평가(40) 1. 차별성: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공정 및 원리 등의 독창성 2. 신규·진보성: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 거나 또는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 및 성능 등을 개선·개량한 정도가 현저한 기술 3. 자립성: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투입 정도	A. 신규성 평가(40) 1. 차별성: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공정 및 원리 등의 독창성 2. 신규·진보성: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 거나 또는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 및 성능 등을 개선·개량한 정도가 현저한 기술 3. 자립성: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투입 정도					
1차 심사	 B. 기술성 평가(40) 1. 성능향상: 제시한 목표 및 기준 달성 정도를 정량적·객관적인 데이터, 증명자료 등에 근거하여 제시한 정도 2. 발전성: 해당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지속 적인 성장 발전 가능성 3. 안전성: 기술공학적 안전성과 이용자 안전성 	 B. 기술성 평가(40) 1. 품질향상: 제시한 목표 및 기준 달성 정도를 정량적·객관적인 데이터, 증명 자료 등에 근거하여 제시한 정도 2. 공사기간 단축: 기존기술 대비 공사기간 등이 정량적으로 단축된 정도 3. 안전성 기술공학적 안전성과 이용자 안전성 					
	C. 경제성 평가(20) 1. 생산·가격경쟁력: 생산성 향상, 비용·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수준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시장수요의 충족정도 2. 파급성: 타기술과의 융합·호환 가능성 및 해양/수산업, 사회 및 국가 등의 전반 적인 이익에 미치는 영향 정도	C. 경제성 평가(20) 1. 설계시공비 절감: 기존기술 대비 설계시공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(자재, 인력, 장비 투입 등) 절감 정도 3. 파급성: 타기술과의 융합·호환 가능성 및 해양/수산업, 사회 및 국가 등의 전반적인 이익에 미치는 영향 정도					
2차 심사	 A. 현장적용성 평가(100) 1. 신뢰성: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, 적용현장에서 기존기술의 문제점과 한계점 극복 정도 2. 안정성: 균질한 품질 및 성능 등의 재현가능성 3. 품질경영: 생산라인 구축, 공정관리 상태, 시험검사 상태, 부품재료・완제품 관리상태, 품질경영체계(품질계획, 품질통제, 품질보증, 품질개선 등) 구축 수준 4. 안전성: 기술의 현장적용시 발생할 수있는 위해요소 파악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수립 정도 	A. 현장적용성 평가(100) 1. 시공성: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, 시공의 편의성 및 절차의 간소성 확보 정도 2. 안정성: 균질한 공사 품질 등의 재현가능성 3. 유지관리: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시노력, 불편 등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도 및 생애주기에 걸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작간접적인 비용(자재, 인력, 장비 투입 등) 절감 정도 4. 안전성: 기술의 현장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파악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수립 정도					
3차 심사	1차 및 2차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·평가 결과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기준고 인증의 필요성(지원 및 파급효과)	바의 적합성					

나.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·평가 세부기준

*「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(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112호)」별표3

구분	팡가항목(100)	평가기준			
전문분과 위원회	신기술 활용실적(15)	인증신기술 활용건수 / 공사비 규모에 따라 배점			
	기술수준(15)	국내외 동종 유사기술 대비 신기술의 수준에 따라 배점			
	후속개발노력(15)	신기술 인증 후 기술 개량·개선 정도에 따라 배점			
	시장성(15)	국내외 시장수요 및 활용가능성 등 시장에서의 가능성에 따라 배점			
	안전성(15)	기술의 현장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대책수립 정도에 따라 배점			
	기술보급 노력(25)	신기술 인증 후 기술보급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실적 에 따라 배점			
종합심사 위원회	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·평가 결과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연장기준과의 적합성 연장의 필요성(지원 및 파급효과)				

4. 평가절차

가.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심사·평가

- (시행계획 공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신청접수,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
- (이해관계인 의견수렴) 신규성 판단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
- (1차 심사) 신규성, 기술성, 경제성 평가
- (2차 심사) 해당 기술의 현장적용성 평가
- (3차 심사)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여부 최종 판정

【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심사일정(안)】

시행계획 공고(접수)		이해관계인 의견수렴		1차 심사 (대면심사)		2차 심사 (현장심사)		3차 심사 (종합심사)
해양수산부 (KIMST)	•	해양수산부 홈페이지공고	•	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	•	현장평가단	•	종합심사 위원회
2/7~3/10 (2/21~3/10)		3/17~4/15		4/22~5/9		5/19~7/4		7/8~17

나.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·평가

-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후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여부 심사

5. 접수절차 및 제출서류

- 가. 해양수산신기술 인증
- (공고기간) 2025. 2. 7.(금) ~ 3. 10.(월)
- (접수기간) 2025. 2. 21.(금) ~ 3. 10.(월) 15:00까지
 - * 2025. 3. 10.(월), 15:00까지 전산 신청 건에 한하여 접수완료
- o (접수방법)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

http://tech.kimst.re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신기술인증 신청접수(신기술인증 →신청접수) →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→ 신청하기 클릭(접수완료)

ㅇ (신규 인증심사 제출서류)

No	제출서류	제출방법	비고
1	(필수제출)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신청서	전산접수	별첨양식
2	(필수제출) 기술설명서	전산접수	별첨양식
3	(필수제출) 기술설명서 요약본	전산접수	별첨양식
4	한국인정기구(KOLAS) 인정을 받은 국내외 공인기관 등으로부터 인증.시험을 받은 증빙자료 또는 핵심기술에 관한 시험성적서(해당 시)	전산접수	-
(5)	법인등기부등본(법인기업의 경우)	전산접수	-
6	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(해당 시)	전산접수	-
7	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관련 서류(해당 시)	전산접수	-
8	「산업표준화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인증서(해당 시)	전산접수	-
9	중앙정부에서 발급된 기존 인증서* 사본(해당 시) * 건설신기술 인증, 환경신기술 인증, 녹색인증 등 만료된 인증서 포함	전산접수	-

- ㅇ (유효기간 연장신청 제출서류)
 -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
 - *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
 - 활용실적 증빙자료 등

6. 심사 수수료

가. 해양수산신기술 인증

- ㅇ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(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)
 - 1차(서류·면접) 심사: 20만원 (접수확인 후 납부안내)
 - 2차(현장) 심사: 50만원 (1차 심사 통과기술 대상에 한하여 개별통보)
- ㅇ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(1건당 심사수수료)
 - 서류·면접 심사: 20만원 (접수확인 후 납부안내)
- *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[별표 5]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・시설 확인 수수료 참고
- ※ <u>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등</u>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으로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<u>수수료 감면 가능</u>. 단, 인증신기술 공고 마감일 기준 증빙서류가 유효하여야 함. 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확인서 제출 필수)
- ※ 공동신청 기관은 기술기여도가 가장 높은 기관이 납부하며, 공동신청 기관 중 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등 포함시 수수료 감면 가능

7. 비고

- 가. 2025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·시설 확인 관련
 - ㅇ 2025. 3월 초 공고 시행예정이며, 평가 기준, 절차 등 추후 공지 예정

8. 문의처

담당기관(부서)	문의사항	문의처	
해양수산부	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공고	044-200-6222,	
(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)	에 6 구현한기술 현 6 세포 중포	sangone93@korea.kr	
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	해양수산신기술	02-3460-0393,	
(성과확산실)	신청, 제출서류, 심사일정 등	sjahn@kimst.re.kr	

- * 담당자가 다수의 전화응대로 통화가 어려울 경우 전자우편으로 문의가능
- **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누리집(www.mof.go.kr/ www.kimst.re.kr) 사업공고(공지사항) 등을 참조